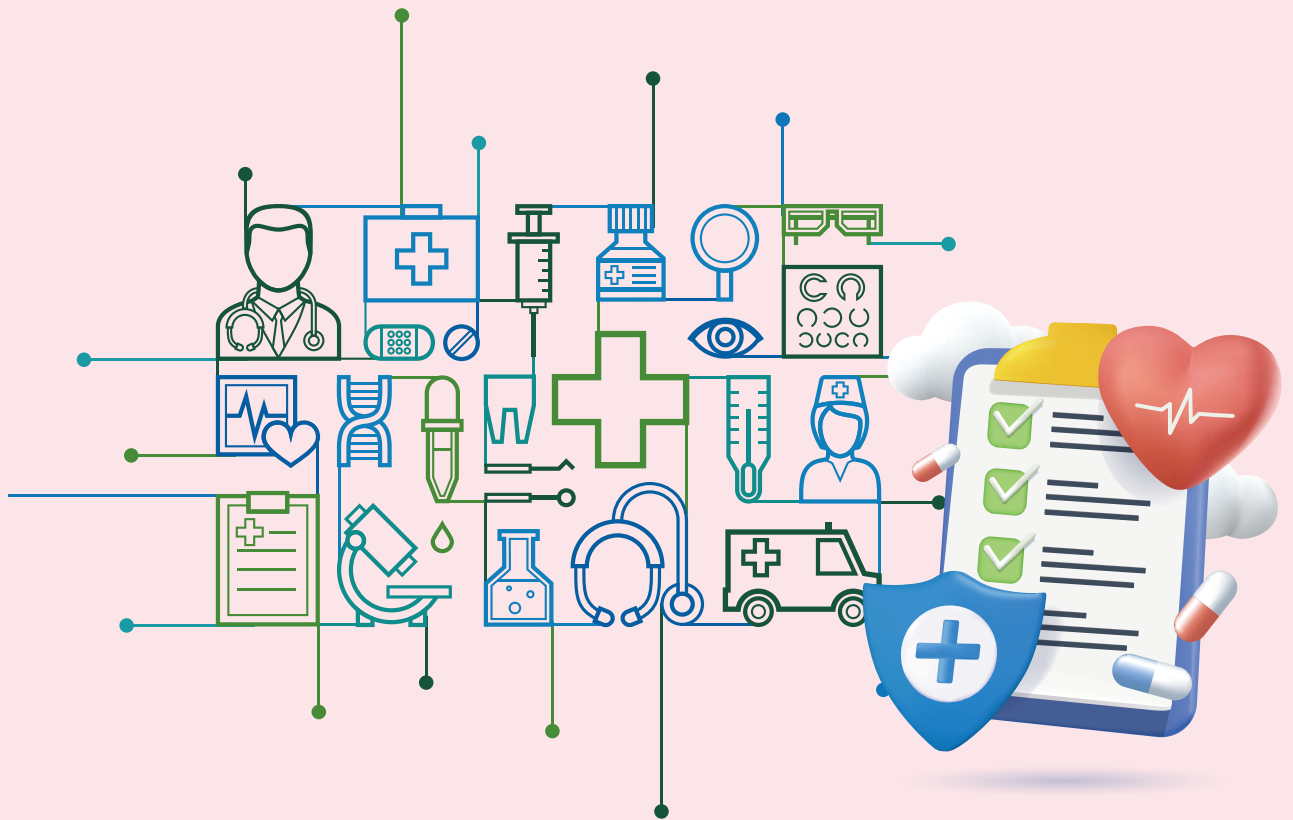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G000N49-2023-57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eoul Branch

동 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요양기관에서 자주 묻는 고시 및 심사지침,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제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제작되었으며 매년 개정발간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고시 및 지침 등 변경에 따른 최신의 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고시 및 심사지침 다빈도 문의사항

1. 일반사항 / 3
2. 기본진료료 / 7
3. 검사료 / 22
4. 영상진단료 / 72
5. 주사료 / 92
6. 마취료 / 97
7. 이학요법료 / 106
8. 정신요법료 / 111
9. 처치 및 수술료 / 112
10. 요양병원 / 135
11. 약제 / 141
12. 치과 / 166
13. 한방 / 176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 181
15. 인력 등급 및 차등제 / 189

II. 요양기관 업무포털

1.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200
2. 영상자료제출 / 202
3. 재심·이의신청 / 202
4.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 205
5. SMS 서비스 / 208

별첨

- 부서별 전화번호 / 215

I. 고시 및 심사지침 다빈도 문의사항 _ 세부목록

1. 일반사항

■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3
■ 처방전 재발급 (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5

2. 기본진료료

■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	7
■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8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추가산정 방법	10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12
■ 격리실 산정기준	14
■ 의(한의)과 중복진료	18
■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21

3. 검사료

■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22
■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23
■ C형 간염항체검사 급여기준	25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26
■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28
■ 싸이로글로불린 검사의 급여기준	31
■ 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33
■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34
■ 갑상선침생검 수기로 산정방법	35
■ 결장경하종양수술 시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36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38
■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40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41
■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의 급여기준	43

■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44
■ 눈의 계측검사	47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	48
■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49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52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57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59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63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66
■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69

4. 영상진단료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72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78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84
■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90

5. 주사료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 실시한 경우 청구방법	92
■ 치료 목적의 관절천자와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청구방법	94
■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95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96

6. 마취료

■ 신경차단술의 산정방법	97
■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101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102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104

7. 이학요법료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106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108

8. 정신요법료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11

9. 처치 및 수술료

-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인정여부 112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114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기준 115
-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및 수기로 산정방법 117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119
-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120
-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122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비중격교정술 동시 실시시 수술료
청구 방법 124
-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125
-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의 산정방법 127
- 결장경하폴립절제술 수가 산정방법 128
- 치료재료대 Suture Anchor 인정기준 130
- 생검용 Forcep과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의 차이 131

10. 요양병원

-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발생한
수가 산정 방법 135
- 정신과 약 복용중인 환자 요양병원 입원관련 문의 137
-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관련 문의 138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139

11. 약제

■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141
■ 치매치료제 인정기준	147
■ 치매치료제의 청구방법	150
■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151
■ 항정신성의약품 일반원칙	157
■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159
■ 골다공증치료제 인정기준	160
■ 진해거담제 일반원칙	162
■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헬럼주 등)	163

12. 치과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수가 산정방법	166
■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167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168
■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169
■ 치석제거 급여기준	170
■ 치과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재시술 수가 산정방법	172
■ 치조골성형술 급여기준	173
■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175

13. 한방

■ 추나요법 실시 횟수	176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178
■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79
■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180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 법인대표자의 개인 개설 가능 여부	181
■ 의사의 중복근무 가능 여부	182
■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 가능 여부	183
■ 물리치료사의 차등수가 인정 가능 여부	184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 신고방법	185
■ 상급병실료 일반병상 확보 기준	186
■ 요양기관 시설 등 공동이용 가능 여부	187

15. 인력 등급 및 차등제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89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19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I

고시 및 심사지침 다빈도 문의사항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Q

uestion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으로 나뉘져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nswer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한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법령 등으로 정하여진 상한금액이 있어 어느 병·의원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나, 비급여는 정하여진 금액이 없어 동일한 진료행위인 경우라도 병·의원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수술, 점제거술 등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병·의원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 (요양급여)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3.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약제
-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처방전 재발급 (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Q
uestion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동일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nswer

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위해 재내원한 경우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단순히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고,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약제 분실하여 다시 처방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회신

○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시행)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2018-269호(2019.1.1. 시행)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시

: 처방전에 기재된‘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 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함.

2 기본진료료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

2

기
본
진료료

Q
uestion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 외의 검사료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nswer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함.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Q
question

공단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환자의 기존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
answer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처방이나 별도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진찰료의 50%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시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T018)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고시 제2017-249호(2018.1.1.시행)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가능한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 ‘가’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가) 일반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나) 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 의거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관련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VII. 별표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18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가 'F' 또는 'G' 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구 분
		코드
		원외처방전 발급
		A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B
		이학요법
		C
		처치 및 수술
		D
		검사
		E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F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G
		- 기재형식 : X(1)/X(1)/X(1)/X(1)/X(1)/X(1)/X(1)/X(200)/X(1)/ X(200) (예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원외처방전 발급, 이학요법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JT018 A/C////G/방사선단순영상진단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 시 추가산정 방법

Q
uestion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결장경 검사 시행 중에 폴립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nswer

건강검진 당일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 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 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 시 추가산정방법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항목과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 가. 상기 검사 중 나854 내시경하생검 및 나560 조직병리검사,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기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상기 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및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검사 등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로 산정함.

다. 상기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Q
uestion

척추의 염좌 상병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한가요?

A
nswer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료 일반원칙

○ 고시 제2021-4호(2021.2.1. 시행)

1. 입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관련
근거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2021.11.1. 시행)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함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하며, 세부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 본
진료료

격리실 산정기준

Q
uestion

전염성 질환 중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격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A
nswer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감염병으로 증상발현 후 5일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 고시 제2022-182호(2022.8.1.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 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근거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심사지침, 공고 제2022-191호(2022.8.1. 시행)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나) 제2급감염병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 홍역 : 발진 후 5일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 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막구균 감염증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다) 제4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 증상발현 후 5일
-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 치료기간
- 장관감염증 내 노로바이러스 : 치료기간

라) 의료관련 감염병

-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마)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C. difficile, 옴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 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의(한의)과 중복진료

Q
uestion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동일날 의과에서 물리치료를 한 후 한의과에서 침치료를 시행하고 각각 청구하였는데 조정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 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환자 전액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따라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

2.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이때,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로 적용함.

나. 세부 적용기준

1)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함.

- 2) 의과 또는 한의과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의과에서 CT 등의 검사를 의과 요양기관에 의뢰하는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관련 근거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2018-193호(2018.10.1. 시행)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에 대한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기준

「복수면허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지침」에 근거하여 복수면허 의료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는 각각 부여됨.

나. 수가산정방법

- (1) 차등수가는 복수면허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하여 산정함.
- (2)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

다. 인력, 시설 공동이용기준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1) 의과·한의과, 치과·한의과 복수면허자의 경우 임상병리, 방사선기기(CT 등)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방사선사,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포함),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이용할 수 없음.
- (2)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 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함.

- (3) 기타 접수창구,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는 생략 가능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하여야 함.
- (4) 이 외에 세부적인 기준은 요양기관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의함.

라. 식사가산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복수의료기관의 식사가산은 한 개의 요양기관에서 식사가산 산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사가산(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은 복수의 요양기관에 모두 산정 가능함.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2

기 본
진료료

Q
uestion

퇴원당일 마약류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nswer

퇴원당일에 조제·투약한 의약품과 퇴원약에 각각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료는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 1회 산정). 다만, 퇴원약에만 마약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

○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1. 마약류 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마약류를 실제 조제·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당 1회, 외래환자는 방문당 1회 산정함. 단, 퇴원환자에게 조제·투약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료는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에 포함됨.
2. 2개이상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 1일 내원하여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 진료를 받고 각각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각각 산정함.

3 검사료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누107가 및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와 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검사 항목이 한 개만 인정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D-dimer 검사는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일반면역검사(누107가 D-dimer-일반면역검사(정성),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반정량(역가)))와 정밀면역검사(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 누107라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02호(2021.4.1. 시행)

누107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일반면역검사(누107가 D-dimer-일반면역검사(정성), 누107나 D-dimer-일반면역검사(반정량(역가)))와 정밀면역검사(누107다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 누107라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를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누107라 D-dimer-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상기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누107다-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를 같은 날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미량알부민 검사를 고시 인정기준에 의거 실시하였는데 조정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미량알부민검사는 ①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②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해 특정내역*(MT004, MT015, MT016, JX999만 해당)에 요 일반검사에서 요단백 검출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MT004	소명자료 구분	X(1)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X(2)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제출 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 형태로 기재 *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VI.별표(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명일련 단위 참조
MT016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X(200)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MT015'에서 정한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200자), 한글(100자)
JX999	기타내역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 평문(Free Text) ※영문(700자), 한글(350자)

3

검사로

관련
근거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8-105호(2018.6.1. 시행)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C형 간염항체검사 급여기준

Q
uestion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전 검사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3

검사로

A
nswer

C형 간염항체검사는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급여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로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됩니다. 사유가 있을 시 참조내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C형 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176호(2019.9.1. 시행)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환자의 증상으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종양검사가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
nswer

종양검사는 원발장기 혹은 속발(전이)장기에 종양이 있는 경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선행검사 등을 통해 임상증상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243호(2020.11.1. 시행)

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및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참고

 α -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급여기준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종양검사 중 누421 알파피토프로틴-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 시

- 1)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 2)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 3)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2개월에 1회, 2년째는 2~3개월에 1회, 3년째는 3~6개월에 1회, 5년까지는 6~12개월에 1회,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 시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참고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243호(2020.11.1. 시행)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AFP-L3)은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바이러스성(B,C형)만성간염]을 대상으로 간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연간 최대 2회에 한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비타민D검사의 급여기준 중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nswer

“위절제술, 위우회술 등의 위 수술, 비열대성 스프루(셀리악 병), 염증성 장질환, 낭성 섬유증, 단장증후군 등의 수술 후 흡수장애”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

누490 비타민 D 검사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의 적용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19-422호(2020.1.1. 시행)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중 가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 다 음 -

1. 위절제술, 위우회술 등의 위 수술
2. 비열대성 스프루(셀리악 병)
3. 염증성 장질환
4. 낭성 섬유증
5.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등의 수술 후 흡수장애

참고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 2) 항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 3) 간부전, 간경변증
- 4) 만성 신장병
- 5) 악성종양
- 6) 구루병
-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 8) 골연화증
-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10)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 11)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 산정방법

-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 2) 인정횟수
 -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다. 기타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누490라 비타민 D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02호(2021.4.1. 시행)

1.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25-OH-Vitamin D, total 검사는 비타민 D 결핍의 선별 또는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가.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 나. 항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 다. 간부전, 간경변증
- 라. 만성 신장병
- 마. 악성종양
- 바. 구루병
- 사.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아. 골연화증
- 자.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차.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 카.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2. 선별검사가 아닌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와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검사 간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가.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
-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

싸이로글로불린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로 실시한 싸이로글로불린검사-정밀면역검사가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3

검사로

A
nswer

싸이로글로불린검사-정밀면역검사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혈청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누425가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204호(2022.9.1. 시행)

누425가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혈청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 나.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관련
근거

누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204호(2022.9.1. 시행)

누425나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은 갑상선암 치료 환자에서 재발이나 치료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후의 환자에서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나 이종항체 등 간섭인자가 양성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 나. 누425가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진료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A
nswer

부갑상선호르몬검사는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만성 신장질환, 골다공증,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의 경우 진단 및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315호(2020.1.1. 시행)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 다. 만성 신장질환
- 라. 골다공증
-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3

검사로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Q
question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을 위하여 T3, T4, free T4, TSH 총 4종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두 인정가능한가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answer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T3, free T3, T4, freeT4, TSH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3종이내는 09항에 청구하고 초과한 1종에 대하여는 E항(본인부담90%)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283호(2023.1.1. 시행)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갑상선침생검 수기로 산정방법

Q
uestion

갑상선 양쪽 엽에 각각 결절이 있어 동시에 양측으로 침생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상선침생검 수기로 200%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
nswer

나859-가 갑상선침생검 소정점수 100%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침생검은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항목이므로 양측 검사 시에도 100%만 산정 가능합니다.

3

검사로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로 [산정지침]

(2)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참고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장기

- 1) 양측장기는 나560 조직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함.
- 2) 갑상선, 편도, 성대, 혈관 수술 후 실시하는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양측의 파라핀 블록수를 합하여 나560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생 략)

결장경하종양수술 시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Q
uestion

결장경하종양수술 시 S상결장에 0.2cm 크기의 폴립 1개, 직장에 0.2cm 크기의 폴립 1개가 각각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병리조직검사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nswer

나560 조직병리검사 100%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조직병리검사는 장기당 1회 산정하여야 하며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위로 구분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장과 직장에 각각 폴립이 있어 병리조직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결장과 직장은 대장 하나의 장기이므로 나550 병리조직검사[1장기당] 100%만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장기

- 1) 양측장기는 나560 조직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함
- 2) 갑상선, 편도, 성대, 혈관 수술 후 실시하는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양측의 파라핀 블록수를 합하여 나560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인접장기

- 1) 위폴씨 수술(Whipple's Op): 췌장, 담낭, 장(Intestine)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
- 2) 방광암 수술시 전립선, 위암 수술시 비장·췌장·간, 담낭절제술 시 담낭: 장기별로 산정
- 3) 비강과 부비동, 편도(Tonsil)와 아데노이드(Adenoid), 두경부 악성종양 시 침샘, 신장 악성종양 시 부신: 한 장기로 산정

- 4) 대망(Omentum), 복막(Peritoneum): 별도장기로 볼 수 없음. 다만 병변이 있어 단독 생검시는 병리조직 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 5) 자궁부속기(Adnexa of uterus, 동측 난소와 난관 등)
: 한 장기로 산정

다. 연결장기

- 1)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 말단 회장(Terminal Ileum)의 경우 연결하여 절제되는 경우 대장과 함께 산정
 - 결장절제술시 결장(Colon), 맹장(Cecum), 회장(Ileum), 직장(Rectum)은 한 장기로 산정
- 2) 요관(Ureter)같은 연결기관: 주 장기에 포함하여 한 장기로 산정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목적의 검사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병이 없는 산모에게 시행한 간기능검사는 산전진찰 검사의 요양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8-135호(2018.7.1. 시행)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1) 혈액학검사
- 2) 요검사
- 3) 혈액형검사
-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 -FP, Estriol, β -HCG, inhibin-A)
- 7) 풍진검사(IgG, IgM)
- 8) 에이즈검사
-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 β -HCG

3) 위 1),2)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관절가동범위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오십견 환자에게 관절가동범위 검사를 실시한 후 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A
nswer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중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가 있거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의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너773 관절가동범위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315호(2020.1.1. 시행)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는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 발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강직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골절 및 탈구 등)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Q
uestion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당일 대장에 있는 폴립(polyp)을 절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이상징후로 내시경 검사와 내시경하 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로 적용하고, 내시경 검사만을 시행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에 해당하는 자-770가이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Ⅳ 산정 행위

I: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II: 나706가(1)(E7060), 나706나(1)(E7062),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III: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IV: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E7623),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추가산정방법

-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I ~IV)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Q
uestion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을 실시하였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손목터널증후군은 주관절 이하에 발생한 원위부 질환으로 근위부 신경병증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검사로

관련
근거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7-152호(2017.9.1. 시행)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 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 나.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관련
근거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인정여부

○ 심사지침, 공고 제2020-340호(2021.1.1. 시행)

손목터널증후군, 발목터널증후군 등 주관절 또는 슬관절 이하 원위부에 발생한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는 동 검사 급여기준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음.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신경인지기능검사의 분류항목 중 종합검사에 포함되는 개별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A
nswer

종합검사와 함께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항목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환자상태 및 종합검사가 평가하는 항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유형 I	무시중후군검사, 경계력검사[청각], 숫자-기호바꾸기검사, 좌-우 구분검사, 손가락이름대기검사, 신체부위가리키기 검사, 손잡이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 보속 성검사, 운동 지속불능증, 주먹-손날-손바닥검사, 양손 교차 운동검사,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 II	시계그리기 검사, 실행증 검사, 숫자와우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전두엽 대비검사
	유형 III	레이복합도형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60문항)
	유형 IV	서울언어학습검사
한국판 CERAD평가집 (CERAD-K)	유형 I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15문항),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유형 II	시계그리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유형 I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 II	스트룹검사

※ 해당내용은 「신경인지기능검사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고시 제2017-167호, 170호 관련(2017.10.1.)로 조회 가능함

관련
근거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229호(2021.9.1. 시행)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 가) 경도인지장애
-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 사) 정신질환
-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만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산정횟수

- 1)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 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연1회
-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 1)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의 경우, 진단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 2) 개별검사의 유형 I 과 유형II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생 략)

눈의 계측검사

Q
uestion

녹내장 의심증상으로 내원하여 눈의 계측검사 시행하였는데 급여 인정되나요?

A
nswer

눈의 계측검사(레이저안축장검사)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임을 알려드립니다.

3

검사로

관련
근거

눈의 계측검사 [편측]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73호(2020.9.1. 시행)

1. 눈의 계측검사[편측]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내장 수술 전 1회

나. 상기 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환자에게 증상은 없으나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한 안구광학단층촬영은 건강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nswer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의 망막분야 및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 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의 시신경분야, 녹내장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4-240호(2015.1.1. 시행)

1.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망막분야

: 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원공, 맥락망막염, 맥락막악성신생물, 망막동맥류, 유전성 망막질환, 망막박리, 망막종양 등

나. 시신경분야

: 시신경염, 선천성 시신경질환, 유전성 시신경질환, 유두부종, 시신경위축, 시신경 관련 시력장애(약시 등), 시신경종양 등

다. 녹내장

2. 상기 1. 백내장 수술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하도록 함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Q
uestion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에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별도로 산정가능한가요?

3

검사로

A
nswer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내시경 세척·소독료(분류번호 나799-1, EA010)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본인 희망 건강검진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검사료 제외한 시술료를 급여로 청구*	
내시경 세척·소독료	암검진 시 내시경 소독 비용을 별도 보상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관련근거	고시 제2016-268호(2017.1.1.) 질의응답 3번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238호 (2022.10.25.)

* 해당시술료에서 내시경 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산정코드 800 기재)

- 예시 :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Q7701800

관련
근거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추가산정
방법고시**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항목과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상기 검사 중 나854 내시경하생검 및 나560 조직병리검사,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2)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 기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상기 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 1)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및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검사 등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로 산정함.

다. 상기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1)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

관련
근거**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고시 제2016-268호(2017.1.1. 시행)

[Q]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 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A]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17.5.1.적용)에 따라 2017년 5월1일부터 암검진 시 내시경 소독 비용을 별도 보상하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해당내용은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최근 고시 제2022-204호(시행일 2022.9.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로

관련
근거**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시술을 시술한 경우 내시경 소독·세척료 별도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 화신 안내**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70호(2008.5.22. 시행)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검사의 유전학적 양수검사시 유도초음파도 급여 가능한가요?

A
nswer

유전학적 양수검사가 비급여 대상 검사이므로 이에 시행하는 유도 초음파도 비급여입니다.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2.5.1. 시행)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신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951나(1) '주'항 제외)

- 아 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항에 따라 산정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3

검사로

나)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주'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함.

다) 나951나(1)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1)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 (2)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 (3)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 (4)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5)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3) 유도 초음파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로)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 가) 유도초음파(I):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 나) 유도초음파(II):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 다) 유도초음파(III):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 라) 유도초음파(IV):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나. 산정방법

- 1) 각 장기별 검사는 해당 장기 및 주변 림프절, 혈관, 연부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가.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 2) 상기 가. 1) 진단 초음파와 3) 유도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3) 상기 가.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단순초음파를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다. 상기 가.의 규정 이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별첨1], [별첨2]
- 2) 「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유도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 3) 나943다 태아정밀 심초음파는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이 경우 다태아는 가.2).가)의 적용을 받음.
- 4)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가)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에 자궁부속기 및 자궁내막의 상태 등을 보는 경우 나944라(1)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를 산정함
 - 나) 보조생식술 관련 약제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을 관찰하는 경우 나940나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
- 5)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시술 시(선별급여 포함) 유도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나956라 유도초음파(Ⅳ)를 산정함

※ (질의응답)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유도초음파는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목록 중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해당될 경우 산정할 수 있음

분류	코드	행위명
(I)	M6850	낭종흡인요법
	C8040	흉막천자
	C8060	심낭천자
	C8100	더글라스와천자
	C8111	양수천자
	C8112	
	O1510	흉강삽관술(폐쇄식)
	O1901	부분체외순환
	O1903	
	O1905	
	M6670	경피경간담즙배액술
	M6690	경피적담낭조루술
	M6741	경피적투브배액술
	M6773	경피적간내출몰주입술
	M6830	경피적장루술[공장루, 맹장루포함]
(II)	기타	동정맥루 혈관지도검사, 수술 전 tattooing, 수술 전 wire 삽입
	C8502	침생검(표재성)-근육및연부조직
	C8506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C8511	침생검(심부)-복막
	C8513	침생검(심부)-장기[편측]
	C8641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551	전립선생검-경피적
	C8561	고환,부고환생검-경피적
	C8572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C8573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C8574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C8575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C8591	갑상선생검-침생검
	M0031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M0032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R4028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자궁용적측정포함)
	R4103	질식배농술-질벽혈종제거
	R4271	자궁내장치삽입술
	R4277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R4441	계류유산소파술-12주미만
	R4442	계류유산소파술-12주이상

분류	코드	행위명
	R4460	태아축소술
	R4521	자궁소파수술
	M6781	장중접종 비관혈적정복술-성공한경우
	M6782	장중접종 비관혈적정복술-실패하여 관혈적수술을 실시한 경우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Ⅲ)	M1771등	경피적경화술
	R4016	양막내양수주입술
	R4182	자궁내반중수술-용수정복
	R4435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 배액술[질부접근]
(Ⅳ)	QZ841등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M6880 등	경피적냉동제거술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유도로 별도 산정]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3개월 전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담석으로 진단 받은 환자가 고열,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습니다. 담낭염이 의심되어 '나944가(1)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를 시행하였는데 이 경우 급여 대상인가요?

A
nswer

30일 이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로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나. 산정방법 1)가)에 따라 급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3

검사로

가) 일반

간우엽의 횡스캔, 간우엽의 늑간스캔, 간좌엽의 종스캔, 간좌엽의 횡스캔, 간정맥의 늑간하 스캔, 간우엽의 상부, 우간하부와 우측신장피질의 관상면 스캔, 담낭의 장축, 간외담관의 종스캔, 비장의 장축스캔, 췌장두부의 횡스캔, 췌장체부·미부의 횡스캔

나)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우간문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스캔과 우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스캔, 좌우간문맥 분지의 횡스캔도 포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판독일시, 의료기관명칭

나) 검사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이상 여부, 담관확장 여부, 비장종대 여부, 췌장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 1회,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나)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만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정밀(나944가(1)(나)) 연 2회

다)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 연 1회

2)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함.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나. 산정방법 1)나(2)의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A
nswer

직장종양, 염증성 장질환(크론병)으로 직장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High or complicated type fistula)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근거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1.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는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검사로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나944가(2) 충수

상행결장 횡스캔, 상행결장 종스캔, 충수의 장축스캔, 충수의 횡축스캔

※ 충수가 안 보일 경우 맹장 말단부 스캔

나) 나944가(3) 소장·대장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 소아 비대유문협착증의 경우 유문부(횡스캔, 종스캔) 포함

다) 나944가(4) 서혜부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스캔

※ 대퇴혈관(femoral vessel)이나 정삭(spermatic cord)이 보이는 범위

라) 나944가(5) 직장·항문

(1) 직장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2) 항문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마) 나944나 신장·부신·방광

(1) 신장·부신

신문(renal hilum)을 포함하는 좌·우신 각각의 관상면 스캔, 좌·우신 각각의 상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중간부 횡스캔, 좌·우신 각각의 하부 횡스캔

※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한 스캔

(2) 방광

방광 상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횡스캔, 방광 경부 횡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충수

충수 관찰 여부, 충수가 관찰된 경우 충수의 직경, 장벽의 비후 여부, 종괴 유무, 충수석 유무, 농양 또는 액체저류 유무

(2) 소장·대장

장벽의 비후 여부(비후 발견 시 위치 기술),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복수 유무, 기타(농양, 장루 등) 이상 유무

- (3) 서혜부
탈장 유무, 종괴 유무, 림프절 비대 여부
- (4) 직장
직장벽의 종양 유무, 직장벽의 종양 침윤 정도(관찰 시), 직장벽 비후 유무, 주변 림프절 비대 여부, 직장 주위 종양 유무
- (5) 항문
치루 유무(내공의 위치(관찰시), 누관의 경로(관찰 시)), 농양 유무, 종양 유무, 괄약근 손상 유무
- (6) 신장·부신
신장 실질의 에코, 신장의 크기, 신장의 국소병변(낭종, 고형종괴 등) 유무, 수신증 유무, 부신 이상 유무
- (7) 방광
방광벽 비후 여부, 방광 종괴 유무, 방광 결석 유무

나. 산정방법

-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1)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다만, 선천성 요로계 기형환자 중 만 1세미만 소아는 연 2회)
 - (2)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1회
 - (3) 상기 (2)를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 2)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Q
uestion

잔뇨량 측정 방법이 다양한데, 방법에 따른 산정 수가가 궁금해요

A
nswer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 확인여부에 따라 잔뇨량 측정 시에는 나940가 단순초음파(1) 또는 나944나(3) 방광초음파 산정가능하며,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 잔뇨량 측정 시에는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185호(2019.9.1. 시행)

복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 시 방광부위도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
nswer

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검사 시행 시 전립선 상부에 제한적으로 보이는 방광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는 방광초음파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검사로

관련
근거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다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진단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전립선·정낭(경직장)

전립선 기저부 횡스캔, 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 첨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함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양측 정낭 횡스캔

나) 전립선(경복부)

전립선 중간부 횡스캔, 전립선요도를 포함한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다) 음경

음경의 시상면 스캔, 음경의 상부 횡스캔, 음경의 중간부 횡스캔, 음경의 하부 횡스캔

라) 음낭

한 영상에서 본 양측 고환의 횡스캔, 좌·우측 각각 고환의 장축스캔, 시상면 장축스캔과 직각으로 시행한 좌·우측 각각 고환 중간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 부고환 시상면 스캔(두부, 미부 포함), 좌·우측 각각 정삭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전립선·정낭(경직장)

전립선 전체 및 이행부위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및 과혈관성 병변(도플러 영상의 경우) 유무, 정낭의 이상소견 여부

(2) 전립선(경복부)

전립선 부피, 전립선 내 국소병변 유무

(3) 음경

음경의 종괴 유무, 음경해면체 백(색)막의 손상 혹은 비후

(4) 음낭

음낭 내 양측 고환의 존재 여부, 양측 고환 부피(혹은 장축의 길이), 고환 이상 유무, 부고환 이상 유무, 기타 음낭 이상 소견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나944다(1)주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의 선천성 기형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렵거나 항문이 포함된 수술로 항문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아 래 -

가)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 (3)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 2)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 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방법에 따라 수가 산정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nswer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법(경직장, 경질, 경회음부, 경복부)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1.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라 여성생식기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자궁·자궁부속기(난소, 난관 포함)·더글라스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일반

자궁의 경부·체부·내막 및 더글라스와를 포함한 자궁의 종스캔, 자궁내막을 포함한 자궁의 횡스캔, 좌·우측 각각 난소 스캔

나) 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생리식염수 주입 전·후 각각 스캔도 포함

다)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이상 소견 존재하는 부위(더글라스와, 자궁경부, 자궁체부, 자궁내막, 난관, 난소, 골반강 등) 스캔도 포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자궁의 굴곡 방향(전굴·후굴), 자궁의 장축·횡축 길이, 자궁의 이상종물 유무, 자궁내막의 두께 및 이상종물 유무, 좌·우 난소의 이상종물 유무, 더글라스와 액체저류 유무를 포함해야 하며,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나944라(2))로 산정함.

- 다 음 -

- (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 (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 (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 (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 (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 나) 상기 가)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 다)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2)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 (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Q
uestion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나. 산정방법의 1) 나)의 '매체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3

검사로

A
nswer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및 포도막염 질환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근거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1.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전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1가 안구·안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안 초음파는 좌·우안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안구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횡스캔, 수정체·유리체·망막 및 시신경을 포함한 종스캔

나) 안와

눈꺼풀 전층을 포함한 스캔, 눈물배출기관 혹은 눈물샘을 포함한 안와 스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1) 안구

유리체 이상 유무 및 유리체출혈 양상, 망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맥락막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후유리체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시신경유두의 형태 이상 유무, 안내의 종양 유무, 안내의 이물 유무 및 위치

(2) 안와

안와의 종양 및 염증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꺼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눈물배출기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폐쇄나 협착 여부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안구·안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 1회

2) 안구·안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4

영상진단료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Q

uestion

척추부위에 3차원 CT 촬영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nswer

척추부위에 촬영한 3차원 CT는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20-20호(2020.2.1. 시행)

1.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

2) 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

다. 경부(Neck)

1)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라. 흉부(Chest)

- 1) 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
- 2) 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
- 3) 선천성 횡격막성 질환(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소아)

마. 복부[골반포함] (Abdomen)

- 1) 식도폐쇄증(esophageal atresia)(소아)
- 2) 항문직장기형(anorectal malformation)(소아)
- 3) nutcracker 증후군(소아)
- 4)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 5) 간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 6) 수술이 필요한 위암, 대장암
- 7) 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 8) 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바.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 1)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 2) 건관절 인공관절 수술 전 관절와의 형태 및 골결손 정도 평가
- 3) 대퇴비구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 수술 전 평가

사. 척추(Spine)

- 1)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 2)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2. 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여 공개 후 인정함.

관련
근거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인정기준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 6) 대동맥질환, 동맥류
-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Brain)

-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 4) 뇌전증
-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 2) 타액선 결석
-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 4) 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라. 경부(Neck)

-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마. 흉부(Chest)

- 1) 미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증,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 2) 중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 7) 기관지 이물
-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만, 자)~카)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중등도 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 자) 교착성 심낭염
 -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의 유착 확인
 - 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바. 복부 [골반포함](Abdomen)

-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 2)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 7) 선행 검사 상 진단이 어려운 급성 복증
- 8) 심부 헤르니아
- 9) 허혈성 장 질환
- 10) 자궁내막증
- 11) 자궁 외 임신
- 12) 정류고환

사.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 7)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아. 척추(Spine)

-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자. 3차원 CT

상기 가.~아.의 급여대상 중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상기 가.~자. 이외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Q
uestion

두통, 어지럼이 있는 환자에게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실시 후 MRI 촬영을 한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A
nswer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입니다. (단,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Q
uestion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후 시행한 척추 MRI 비용은 급여 산정가능한가요?

A
nswer

퇴행성질환으로 척추 수술 후 수술부위 확인 등을 위해 시행한 척추 MRI는 급여대상이 되는 척추검사(악성종양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고시 제2020-45호(2020.4.1. 시행)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 나) 뇌혈관질환
 -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아) 치매
 - 자) 뇌전증
 - 차) 뇌성마비
 -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마)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 가)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 아 래 -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 (3)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 (7) 중추성 어지럼
-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다)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2)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뇌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단,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예코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라)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의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뇌·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 2) 상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참고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고시 제2022-51호(2022.3.1. 시행)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압

가) 원발성 압(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압(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2) 추적검사 (단, 가.2)는 제외)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 3) 위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의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Q
uestion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으나 이상소견을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척추 MRI 촬영 시 급여 가능한가요?

A
nswer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결과를 기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고시 제2022-51호(2022.3.1. 시행)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1) 척추염
 - (2) 추간판염
 -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 (4) 척수염
 -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 (1) 척추 골절 및 탈구
-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 (1) 척수병증
-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

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경추, 흉추, 요천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과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2) 척추강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 중 T2 강조영상(3D heavily T2WI)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경추, 흉추, 요추, 경흉추, 흉요추, 경흉요추로 촬영 가능

(3) 전척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경흉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경흉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경흉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흉요천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을 포함하고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영상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시상면에 해당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0.8mm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가) 척추(경추, 흉추,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충 및 신경근병변, 그 외 감염성, 염증성, 종양성,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나) 척추강: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충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하며, 자발두개내압저하와 같이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병변의 유무와 위치를 상세 기술함.

(다) 전척추: 척추체 골수의 이상 및 골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의 이상 및 척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충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3) 촬영 범위에 포함된 후복강 및 척추 주위 연부 조직 등 척추 외 영역의 주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질의응답 - [별첨]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 문서공통정보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성별 등

☐ 기본정보 진료일자, 요양기관 번호 등

☐ 진료 내용

○ VAS score (NRS)

Axial (back or neck) pain (0-1-2-3-4-5-6-7-8-9-10)

Radicular pain (0-1-2-3-4-5-6-7-8-9-10)

○ Motor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Low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 Sensory abnormality Upper extremity (0-1-2)

Lower extremity (0-1-2)

○ Deep tendon reflex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 / + / ++ / +++) 우 (- / + / ++ / +++)

Lower extremity: 좌 (- / + / ++ / +++) 우 (- / + / ++ / +++)

○ Pathologic reflex

Babinski sign (Y or N)

Ankle clonus (Y or N)

Hoffman sign (Y or N)

Others ()

○ Physical examination

• Cervical

Spurling sign (Y or N)

Lhermitte sign (Y or N)

Shoulder abduction sign (Y or N)

• Lumbar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 (Y or N)

Femoral Nerve Stretch Test (FNST) (Y or N)

• Gait

Tip-toe gait (Y or N)

Calcaneal gait (Y or N)

Limping gait (Y or N)

Intermittent claudication (Y or N)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해당 여부

○ 초기에 비해 악화된 방사통과 감각마비 ☐

○ 초기에 없던 병적 반사 ☐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Q
uestion

62세 여자인데 골밀도 검사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등에게 급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거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

○ 고시 제2019-28호(2019.3.1. 시행)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 1. 저체중(BMI < 18.5)
 -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 2) 추적검사

-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 (1) 정상골밀도($T\text{-score} \geq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2) $T\text{-score} \leq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 1) 진단 시 1회 인정
- 2) 추적검사
 - 가) $Z\text{-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 나) $-2.0 \leq Z\text{-score} \leq -1.0$ 인 경우: 1년에 1회
 - 다) $Z\text{-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5 주사료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 실시한 경우 청구방법

Q
uestion

같은 날 외래에서 무릎 부위에 관절강내주사를 시행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경우 각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nswer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무릎 부위에 각각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주된 치료인 관절강내주사만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금액이 적은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 고시 제2011-10호(2011.2.1. 시행)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참고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20-340호(2021.1.1. 시행)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른 동일목적의 중복진료 및 주된 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연번	분류코드	분류명칭
1절 기본물리치료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MM010	표층열치료
	MM020	심층열치료
	MM070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MM080	간섭파전류치료
2절 단순재활치료	MM041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MM042	파라핀욕 [1일당]
	MM043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MM045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MM046	수치료-하버드탱크치료 [1일당]
	MM049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MM051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MM052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170	유속치료 [1일당]

치료 목적의 관절천자와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청구방법

Q
uestion

동일 부위에 치료목적으로 관절천자 후 관절강내 주사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주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nswer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802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하며, 동일부위에 실시한 마9 관절강내 주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치료목적의 나802 관절천자와 마9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천자 주1.에 의거 나802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인정하되,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마9 관절강내주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Q
uestion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의 실시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5

주사료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Q
uestion

환자가 수액 주입 시 혈관이 자주 막혀서 control set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수액유량조절기(control set)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nswer

수액유량조절기(control set)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이며 단순한 혈관유지 등의 이유로 사용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 고시 제2021-206호(2021.8.1. 시행)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6

마취료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신경차단술의 산정방법

Q
uestion

경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척추후근신경절차단술을 주 2~3회 간격으로 실시하였는데, 일부가 50%수가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 100%, 15회를 초과 시에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회 초과 실시가 확인된 경우에 신경차단술 수가를 50%로 조정한 것입니다.

Q
uestion

경추나 흉추, 요천추 부위의 신경차단술 시 분절(level) 적용이 되지 않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혹시 있다면 수가 산정방법을 알고 싶어요.

A
nswer

분절 미적용 차단술 부위는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부위이며, 편측 시행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양측 시행시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마취료

관련
근거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고시 제2022-128호(2022.7.1. 시행)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 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다만,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나. 수가 산정방법

- 1)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 2)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1) 대·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 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 (2) 바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 하였을 경우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
- (3)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 신경 또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 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나)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l) 적용 및 (2) 분절(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

(1) 분절 적용 차단술

- 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편측: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200%)
- 양측(또는 편측, 양측 동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 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2) 분절 미적용 차단술

- 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3)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

- 항목: 척수신경 후지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다)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 (1)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 (2)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바26나(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 점수를 각각 산정함.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 1)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함.
- 2)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함.
- 3)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함.
- 4) 천장관절신경차단술(Sacroiliac Joint Block):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1일 최대 산정범위

: 상기 가.~다.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를 산정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Q**
uestion

만 75세 환자에게 동통완화의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 노인 가산이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신경차단술을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노인 가산 및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거 가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6

마취료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Q
uestion

C-arm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무엇인가요?

A
nswer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바22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바23 관련: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익구개신경절, 바24 관련 :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supraclavicle approach 경우만), 바25 관련 :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천장관절,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Psoas compartment block : blind block도 가능), 바26나 관련: 흉요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하장간막신경총, 상하복신경총입니다.

관련
근거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 고시 제2022-128호(2022.7.1. 시행)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다.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Lumbar or Sacral Plexus),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마.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가.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가)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나)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나.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 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Q
uestion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을 1level 양측으로 시행시 수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nswer

1 level 양측을 시행한 경우,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 고시 제2009-180호(2009.10.1. 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함.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가) 1 level 시행시

- 편측 -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료에 포함)
- 양측 -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

- 편측 - 제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바22가 최대 100%산정)
- 양측 -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 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제2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바22가 최대 150%산정)

(2) 약제비 : 조영제,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

참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19-429호(2013.9.1. 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상기 가 또는 나 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7 이학요법료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 급여기준

Q
uestion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를 실시하였는데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물리치료와 병행 시행 시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nswer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2.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실시하는 경우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가.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사104주 간섭파 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 [1일당]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Q
uestion

뇌졸중이 발병한지 9개월이 된 환자에게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를 1일 2회 실시하였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 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 심사지침, 공고 제2019-422호(2020.1.1. 시행)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 2)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하나,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함.

3) Vegetative state(식물인간 상태 등)는 발병기간에 관계없이 사례별로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만 인정함.

나. 발병 후 적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기능 회복 및 호전여부 등에 따라 상기 가.항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재활기능치료 중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와 사130-나 보행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라.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추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 2회 인정함.

마. 작업치료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사123-다 특수작업치료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다른(단순작업치료 + 특수작업치료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1종만 인정함.

바.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는 객관적 소견(연하장애평가검사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3개월마다 실시한 연하장애 평가검사(비디오조영 연하검사 또는 내시경연하검사)에서 Penetration-Aspiration Scale(PAS)가 5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발병 또는 수술 후 6개월까지는 PAS 3이상인 경우 인정함),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

* K-MBI :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 MRS : Modified Rankin Scale

* FIM :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 DRS : Disability Rating Scale

※ Penetration-Aspiration Scale(PAS)

1. Material does not enter the airway
2. Material enters the airway, remains above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from the airway
3. Material enters the airway, remains above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airway
4. Material enters the airway, contacts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from the airway
5. Material enters the airway, contacts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airway
6.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into the larynx or out of the airway
7.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trachea despite effort
8.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no effort is made to eject

참고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166호(2019.8.1. 시행)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IV)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가. 척수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개선

8 정신요법료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Q
uestion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를 하루에 2회 시행한 경우 모두 인정되나요?

A
nswer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신치료는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개인정신치료 I~V로 구분되며 이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신치료는 I~V를 불문하고 1일1회만 산정할 수 있고,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 고시 제2018-135호(2018.7.1. 시행)

1.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2. 아1 개인정신치료는 아1가 개인정신치료 I, 아1나 개인정신치료 II, 아1다 개인정신치료 III, 아1라 개인정신치료 IV, 아1마 개인정신치료 V를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3.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8

정신
요법료

9 처치 및 수술료

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인정여부

Q uestion 입원중인 환자에게 상지의 3도 화상이 있어 화상처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처치가 일요일에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 공휴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nswer 입원기간 동안 화상처치나 대상포진 처치, 수술 후 처치와 같이 계속되는 처치인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1)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 ~ 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 ~ 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 (4)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9)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제9장(별표8)에 열거한 항목 또는 제10장(별표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Q
uestion

수술료가 인정기준 초과로 심사 조정되었고, 마취료와 마취약제, 치료재료 등 제반비용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수술과 직접 연관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도 요양급여범위가 아닌가요?

A
nswer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 심사지침, 공고 제2021-333호(2022.1.1. 시행)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기준

Q
uestion

기관지염에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기, 급성 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단순기관지염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 고시 제2017-152호(2017.9.1. 시행)

1.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상기 1. 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응급실 또는 입원진료 중인 환자

- 1) 정량식(또는 분말)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text{PaO}_2 < 60\text{mmHg}$ 등)”이 있거나 “하기도경련에 의한 천명(Wheezing)”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성기 일주일 이내 인정함
- 2)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에 사례별로 인정함

나.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증기흡입치료하는 경우

9

처치 및
수술료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1일당]

- 주: 1. 1일 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소아, 노인, 안면마비, 의식불명 등 일반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천식발작 치료시에는 1일 3회, 천식지속상태 치료시에는
1일 6회까지 산정한다.
2. Disposable Nebulizer Kit, Mask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및 수기로 산정방법

Q
uestion

오른쪽 발바닥 및 동측 여러 발가락에 각각 4개와 3개의 사마귀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nswer

우선 시행하고자하는 사마귀제거술이 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등에 사마귀가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의 사마귀제거술은 급여대상이 되나, 사마귀가 몸통이나 허벅지 등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대상입니다. 수기료는 발가락과 발바닥은 타 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 수기료는 400%(발바닥 200%+발가락200%)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163호(2022.7.1. 시행)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항문생식기

-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9

처치 및
수술료

-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손·발

- 1)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 2) 손·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발 부위 구분(2부위)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관련
근거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89호(2022.7.12. 시행)

-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또한,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을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Q**
uestion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의 보존치료 범위 및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보존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합니다. 치료내용 및 기간 산정은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며, 타 요양기관의 치료내역은 해당 기관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근거****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53호(2021.7.1. 시행)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 3) 척수병증(Myelopathy)
-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9처치 및
수술료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Q
uestion

6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되고, 요추부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되어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실시하였으나 조정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A
nswer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신경공 협착이 동반된 경우 또는 동일 경로를 통한 재수술에는 불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신경공 협착이 동반된 경우 또는 동일 경로를 통한 재수술에는 불인정함.

관련
근거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Q
uestion

환자가 손가락의 깊은 자상(stab wound)으로 내원하여 동일 부위의 flexor tendon 1개, extensor tendon 1개를 봉합하는 경우의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A
nswer

수가산정방법에 의해 신전(extensor)측의 경우는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굴곡(flexor)측의 경우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가능하며, 동일 부위의 수술이므로 주·부수술 개념을 적용하여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 100%,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50%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17-118호(2017.7.1. 시행)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굴곡측

- (1) 건·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2) 건·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 (4)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5)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비중격교정술 동시 실시시 수술료 청구 방법

Q
uestion

1일 입원하여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을 양측으로 시행하면서 연골에 달하는 비중격교정술을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술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nswer

관련 고시에 의거 양측으로 실시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자102) 수기료가 비중격교정술-연골에 달하는 것(자100-가) 수기료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기료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200%와 자100-가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 50%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자100 비중격교정술과 양측으로 동시에 시행한 자101 하비갑개절제술 또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 고시 제2014-126호(2014.8.1. 시행)

양측으로 자101 하비갑개절제술 또는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100 비중격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가. 자100 비중격교정술 수기료가 동시 실시한 양측 수기료보다 큰 경우 : 자100 소정점수의 100%, 동시 수술 소정점수의 1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 산정
- 나. 자100 비중격교정술 수기료가 동시 실시한 양측 수기료 보다 작은 경우 : 자100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동시 수술 소정점수의 200% 산정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Q
uestion

자궁내장치(IUD)를 시행한 환자에게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재삽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진료비를 보험급여할 수 있나요?

A
nswer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고 동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가 자궁내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는 자427-1 자궁내 장치 제거료 50%를 보험급여로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 고시 제2011-50호(2011.5.1. 시행)

1.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가 자궁내 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는 자427-1 자궁내장치 제거료를 50% 산정함
2. 다만,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고 동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

참고

자궁내장치(IUD) 제거료 급여기준

○ 고시 제2017-263호(2018.1.1. 시행)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 또는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거시 자궁내장치제거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다 음 -

가. 지속적인 자궁·질 출혈, 과다월경

9

처치 및
수술료

- 나. 골반통, 복통, 월경통
- 다. 골반염, 자궁·질염
- 라. 자궁천공
- 마. 임신
- 바. 암: 자궁체부, 자궁경부, 유방암(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
- 사. 상기 가.~바. 이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여 제거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참고

자452 자궁소파술과 동시 실시한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인정여부

○ 심사지침, 공고 제2019-422호(2020.1.1.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에 따라 자궁내장치제거료는 자궁소파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의 산정방법

Q
uestion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등의 검사에 선행 또는 동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A
nswer

관련 타 처치 및 검사 등에 선행되는 경우는 주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처치 및 검사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 고시 제2023-11호(2023.2.1. 시행)

1.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등의 검사에 선행 또는 동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 관련 타 처치 및 검사 등에 선행되는 경우는 주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처치 및 검사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임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보험급여과-2482호, '05.6.10.)

2. 자364 요도확장술로 준용하여 산정 가능한지?

○ '23.2.1. 이후 자궁경관협착증에 실시하는 자궁경관협착확장술 행위에 대해서는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9

처치 및
수술료

결장경하폴립절제술 수가 산정방법

Q

uestion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 시 최대 몇 개까지 산정 할 수 있나요?

A

nswer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시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1개가 초과되는 폴립부터 폴립의 개수마다 419.94점을 최대 5개 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개 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가. 폴립 절제술

주: 1개 이상의 폴립을 절제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 개수마다 419.94점을 산정한다
(최대 5개까지)

관련
근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 고시 제2020-243호(2020.11.1. 시행)

결장경하 폴립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0.5cm 미만으로서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점수와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결장경하 폴립 절제와 내시경하생검을 동시 시행 시 절제된 폴립 개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 내시경하생검 수기료를 별도 산정함.

참고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7 직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 고시 제2019-315호(2020.1.1. 시행)

다음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766 결장경검사

나. 나767 직장경검사

다. 나768 S상결장경검사

참고 ▶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 여부**

○ 심사지침, 공고 제2020-157호(2020.6.1. 시행)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 수술 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은 종양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치료재료대 Suture Anchor 인정기준

Q
uestion

견관절부위 인대 재건 수술시 사용되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은 몇 개 까지 인정이 되나요?

A
nswer

견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시 사용 하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는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 부위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110호(2022.5.1. 시행)

1.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Suture Anchor(봉합 나사못)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견관절(shoulder)

- 1) 단독병변일 경우: 6개 이내
- 2) 복합병변일 경우: 8개 이내

나. 주관절(elbow), 슬관절(knee), 완관절(wrist), 족관절(ankle), 고관절(hip): 2개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 슬, 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 슬, 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생검용 Forcep과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의 차이

Q
uestion

생검용 Forcep과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검만 하는 경우에 인정되나요?

A
nswer

절제술용 forcep과 생검용 forcep의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사용목적)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치료재료 급여목록상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으로 등재된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사항 상 절제 및 생검이 가능한 치료재료로 고시된 제품이며, 생검용 forcep으로 등재된 제품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생검 목적으로 사용 시 인정되는 치료재료입니다. 따라서, 절제술용 forcep을 생검만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 고시 제2017-15호(2017.2.1. 시행)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
- 2) 자768 결장경하 출혈지혈법
-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지혈법
-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코드N0041002)

- 1) 자131-1가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 종양제거술 [육아조직 포함] (연성기관지경)
- 2)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3)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9

처치 및
수술료

- 4)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5)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 6) 자777다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경우](용종 및 종양제거술)
- 7)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다. 절제용 Snare(코드N0041003)

- 1)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 2)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 3) 자775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
- 4) 자776마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 5)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라. Papillotome(코드N004100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과정상 유두괄약근 절개(Sphincterotomy)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마. 기타

- 1) 사용개수는 각 시술 당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폴립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하여 동시 사용 시 각각 인정함.
- 2)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과 절제용 Snare는 내시경적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3)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은 생검만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206호(2021.8.1. 시행)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절제 및 절개술 시

-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4)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5)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6)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 7)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

2. 상기 1.가.~다.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

참고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19-80호(2019.5.1. 시행)

1.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2)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3)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급여개수: 1개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위(Stomach)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 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 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3. 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10 요양병원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발생한
수가 산정 방법Q
uestion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의뢰 당일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 상병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직접 청구,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1-257호(2021.10.12. 시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진료의뢰 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10

요양병원

나.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

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다. 산정특례 대상 진료 의뢰 당일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상기 1.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름

참고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 고시 제2021-257호(2021.10.12. 시행)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절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다 음 -

1.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

정신과 약 복용중인 환자 요양병원 입원관련 문의

Q
uestion

오랜 기간 정신과 약(정신분열증 약제)을 복용하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가요?

A
nswer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정신분열증으로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라면 주·부상병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6조(요양병원의 운영)

○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시행)

-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 2020.9.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3., 2017.5.30.>

10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원칙 관련 문의

Q
uestion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는 매월 1일~10일에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10일 이후에 평가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nswer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일 이후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심사 시 ‘지급불능’ 처리가 됩니다.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 행위 환자평가표 [별지 제25호 서식] - 환자평가표 작성 및 적용 원칙

1.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 비치한다.
3.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시 평가인 경우는 입원 제1일~10일 사이에, 월중 특정기간에서 정액수가기간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제1일~10일 사이에 평가하여 작성한다.
4. 환자평가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지난 7일간의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한다. 특정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환자 평가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한다.
6.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익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익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한다.
7.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Q
uestion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nswer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예시〉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고시 제2021-135호(2021.5.4. 시행)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 1)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 2)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3) 「환자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10

요양병원

-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11 약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Q
uestion

경구용 당뇨약제가 3가지까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nswer

경구용 당뇨약제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합니다.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의 조합은 3제 요법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고시 제2023-58호(2023.4.1. 시행)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geq 6.5\%$

나) 공복혈장혈당 $\geq 126\text{mg/dl}$

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geq 200\text{mg/dl}$

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geq 200\text{mg/dl}$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HbA1C $\geq 7.0\%$

(나) 공복혈당 $\geq 130\text{mg/dl}$

(다) 식후혈당 $\geq 180\text{mg/dl}$

(2) HbA1C $\geq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건을 첨부하여야 함.

(3) 인정 가능 2제 요법

구 분	Metformin	Sulfonyl urea	Meglitinide	α -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Metformin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Sulfonylurea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Meglitinide	인정			인정	인정					
α -glucosidase inhibitor	인정	인정	인정							
Thiazolidinedione	인정	인정	인정			인정				
DPP-IV inhibitor	인정	인정			인정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인정	인정							
	ipragliflozin	인정	인정							
	empagliflozin	인정	인정							

구 분	Metformin	Sulfonyl urea	Meglitinide	α -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ipr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ertugliflozin	인정	인정							

(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 다 음 -

- (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 (2)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 가)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 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geq 25\text{kg/m}^2$ 또는
 -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 나) 투여방법
 - (1) 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 (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 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 가) 투여대상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 나)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 수용체 효능제(+Metformin)을 인정
 - 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 가) 투여대상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 나) 투여방법
 -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 (2)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조건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바. 급여 인정용량
-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1) 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 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 3)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 시(복합제 용량 포함)

- 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
 4)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 -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HBr, Teneliglipt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Vildagliptin, Vildagliptin HCl, Vildagliptin nitrate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Metformin HCl, Repaglinide+Metformin HCl
- Voglibose+Metformin HCl
- Lobeglitazone sulfat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 Alogliptin+Metformin HCl, Anagliptin+Metformin HCl, Ev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Teneligliptin HBr+Metformin HCl, Teneli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Vildagliptin HCl+Metformin HCl, Vildagliptin nitrate+Metformin HCl
- Alogliptin+Pioglitazone HCl
- Dapagliflozin+Metformin HCl, Empagliflozin + 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GLP-1 수용체 효능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 Insulin + GLP-1 수용체효능제 (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참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Q&A (2023. 4. 1. 시행)

1. 기존에 2제 요법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3제 요법 대상환자로,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를 처방 및 SGLT-2 억제제(또는 DPP4 억제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인 경우에 급여적용 되는지?
 - 해당 환자가 2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HbA1C가 7% 이상으로 3제요법으로 이미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인정되는 3제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합니다.
2. 4제 처방(3제 병용 인정되는 조합 포함) 시 1제 전액본인부담 가능한지?
 - 예)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SU]에서 SU를 전액본인부담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3. [Met + SGLT-2 억제제 + DPP-4 억제제 + TZD] 4제 병용 처방할 때 TZD 또는 DPP-4 억제제 중 1종을 전액 본인부담하면 되는지?
 - 인정되는 3제 조합에 1제를 추가하여 4제 복용 시, 4제 중 3제 인정 조합에 추가된 1제(기존 3제와 각 허가 범위 내 2제 병용 조합인 경우)에 대해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4. [DPP-4 억제제 + SGLT-2 억제제] 조합의 2제 병용요법은 현재와 같이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인 경우에만 1종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5. 메트포민에 부작용이 있거나 신기능장애로 처방할 수 없을 때 [SU + DPP-4 억제제 + SGLT-2 억제제] 조합은 요양급여 인정되는지?
 - 금번 급여 확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 확대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U + DPP-4 억제제 또는 SU + SGLT-2 억제제'로 인정되는 2제요법에 추가된 1종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의 조합에 대해 1종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치매치료제 인정기준

Q
uestion

아리셉트정을 처방하여 급여로 복용 중인데 치매 증상이 더 심해져 에빅사정을 급여로 병용 투여할 수 있나요?

A
nswer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등)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관련
근거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고시 제2022-181호(2022.8.1. 시행)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1)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 나) 치매척도검사
 -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관련
근거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고시 제2019-21호(2019.2.1. 시행)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 2) 치매척도검사
 -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치매치료제의 청구방법

Q
uestion

아리셉트정을 고시기준에 적합하여 처방하였으나 조정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한 경우 줄번호 특정내역 'JT007'란에 관련 검사결과를 다음의 형식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 미기재시에는 해당 약제가 전산심사 조정되므로 반드시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VII. 별표 1.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07	치매검사결과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예: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하거나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 /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MMSE CDR GDS (예시) 1. 2023.1.20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23.5.1.일에 실시한 GDS 검사 결과가 3인 경우 JT007 16/20230120///3/20230501 2. 2023.1.20.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23.5.1.일에 실시한 CDR검사결과가 2인 경우 JT007 16/20230120/2.0/20230501//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Q
uestion

B형 간염 환자가 간경변, 간암일 때 간수치가 정상이면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급여가 안되나요?

A
nswer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는 간기능 수치와는 관계 없이 HBV-DNA $\geq$ 2,000IU/mL인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는 HBV-DNA 양성인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고시 제2023-37호(2023.3.1. 시행)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 $\geq$ 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 $\geq$ 2,000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 단위 이상이거나,
-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간생검이 곤란할 경우 노829 간섬유화검사(Liver Fibroscan),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

나)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단,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종

나)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라)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약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내성 약제		치료약제				
		단독요법		병용요법		
		entecavir 1mg	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단 독 내 성	lamivudine	인정	인정	인정		
	clevudine	인정	인정	인정		
	telbivudine	인정	인정	인정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다 약 제 내 성	entecavir 0.5mg		인정		인정	
	entecavir 1mg		인정			인정
	adefovir		인정	인정 ^주		인정

주) lamivudine(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내성 이후 발현한 순차내성에 한해 tenofovir disoproxil 병용요법을 인정함.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 3) Entecavir: 만 2세 이상
- 4) Adefovir: 만 18세 이상
- 5) Tenofovir disoproxil: 만 12세 이상
- 6) Tenofovir alafenamide: 만 18세 이상
- 7) Besifovir: 만 20세 이상.

라.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

- 단,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또는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다. 소아환자

1) 초치료 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 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나.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다.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총 18개월 투여까지

라.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나.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5.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HBsAg(+)인 임신부로서 HBV-DNA $\geq$ 200,000 IU/mL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 ※ 최신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함.

【2023년 선별집중심사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일반원칙**Q**
uestion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스틸녹스정을 30일 처방했는데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A
nswer

스틸녹스정은 식약청 허가사항 상 효능효과가 ‘불면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정신성약품 처방원칙에서 약의 투여기간을 ‘1회 처방시 4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초과 처방약제가 기준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관련
근거****[일반원칙] 향정신성약품**

○ 고시 제2023-58호(2023.4.1. 시행)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가. Triazolam(품명 : 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 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 포크랄시럽)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품명 :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등), Zaleplon(품명: 잘레딕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11

약 제

4. 3개월 이상 항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Q
uestion

경구용 서방형제제를 분할 처방하였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모든 경구용 서방형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아니되며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 고시 제2020-69호(2020.4.1. 시행)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인정기준

Q
uestion

X-ray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확인되었는데, 골다공증치료제가 급여 가능한가요?

A
nswer

방사선 촬영 등에서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부위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고시 제2022-207호(2022.9.1. 시행)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
(T-score $\leq$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leq$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mg/cm³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leq$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mg/cm³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ol)를 투여한 경우

※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진해거담제 일반원칙

Q
uestion

상기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진해거담제 3종을 처방하였는데 1종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고시 제2013-127호(2013.9.1. 시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가.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 나. 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 다.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마. 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헬럼주 등)

Q
uestion

헤모글로빈(Hb)dL 9g/dL인 환자에게 주사제 베노헬럼을 투약하였는데 약값 전액이 환자 부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철분주사제는 일반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와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급여 인정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헬럼주 등)

○ 고시 제2020-79호(2020.5.8. 시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

- 1) 헤모글로빈(Hb)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 2) 수술, 출산 등으로 인한 출혈로 신속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11

약 제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참고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코맥 등)

○ 고시 제2020-79호(2020.5.8. 시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1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dL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12 치과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수가 산정방법

Q
uestion

발치술과 동시에 보철물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행위에 대한 수가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A
nswer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차41 발치술(1치당)과 동시에 실시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관련
근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 금속재 포스트제거 [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처2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처2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Q
uestion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를 시행한 후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두 행위에 대한 수가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A
nswer

동일 약 중 1/3약 또는 동일 약 중에 연결된 1/3약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해야합니다.

관련
근거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 - 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동일 약 중 1/3약 또는 동일 약 중에 연결된 1/3약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차22가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차21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Q
uestion

변경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5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제3대구치 제외)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3-45호(2023.3.29. 시행)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외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급여기준

Q
uestion

동일 치아에 복합레진 충전 후 재충전 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nswer

차13나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차13 충전 [1치당]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수가 산정방법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1. 차13가 충전 [1치당]-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1치당]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 차13나 충전 [1치당]-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3.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치석제거 급여기준

Q
uestion

치석제거의 급여기준 및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1. 1/3악당 치석제거(차23-1 가.)는 연령제한 없이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등을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하고
2. 전악 치석제거(차23-1 나.)는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를 급여인정 합니다.
3. 1/3악당 치석제거(차23-1 가.) 또는 전악 치석제거(차23-1 나.)를 1~2개 치아에 실시한 경우는 각각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 고시 제2017-249호(2018.1.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관련
근거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추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12

치 과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치과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재시술 수가 산정방법

Q
uestion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고정체 식립술) 재시술의 수가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임플란트를 식립 후 골유착 실패하여 고정체를 재식립하는 경우 임플란트 2단계 고정체 식립술(2단계) 50%와 재료대 100%가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은 일련의 과정으로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행정해석(Q18)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보험급여과-2076호(2014.7.1. 시행)

- 차고정체(Fixture)를 식립하여 2단계 시술을 종료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어 고정체를 제거하고 고정체를 재식립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코드는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UB121002', 치과의원 기준)하고 사용된 고정체(Fixture) 재료는 별도 산정하나, 고정체 제거술 행위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치조골성형술 급여기준

Q
uestion

치조골성형술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치조골성형술은 차41발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는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등에 급여 인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 100%를 산정하고 제2수술은 50% 또는 70%로 산정가능하나, 차41마 발치술-매복치 또는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 실시한 경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추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 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 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
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Q
uestion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nswer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석제거, 치근활택, 치주소파술 후에 조직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나, 증식된 치은조직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치은연하 또는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처101 치관확장술 가.치은절제술의 1치당 수가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차104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13 한방

추나요법 실시 횟수

Q
uestion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20번째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20번째를 이미 등록하여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 20회 초과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nswer

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연 20회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다른 요양기관이 20번째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먼저 전송한 경우 이후 전송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고시 제2021-10호(2021.1.14. 시행)

1.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

- 다 음 -

가. 대상 질환: (별첨 3)에 명시된 질환

나. 인정 횟수: 환자당 연간 20회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9)·10) 및 거목에 따라 (별첨 3)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참고

한 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 고시 제2019-64호(2019.4.8. 시행)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대한한 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 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추나요법
청구건수(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 의사 근무일수

13

한 방

한 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Q
uestion

한 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A
nswer

한 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한 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 고시 제2021-289호(2021.12.1. 시행)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 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온냉경락요법 청구건수(온냉경락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 의사 근무일수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13

한 방

Q
uestion

변증기술료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nswer

변증진단명과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하40 변증기술료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9호(2020.2.1. 시행)

1. 변증은 환자의 임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으로 진료기록부에 다음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변증 진단명

나.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Q
uestion

벨마비 상병으로 동일부위에 경혈침술(2부위이상)[자락술, 도침술, 산침술]과 복강내침술, 부항술(자락관법),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청구하였는데, 경혈침술(2부위이상) [자락술, 도침술, 산침술]금액이 일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A
nswer

동일부위에 시행한 자락술과 자락관법은 일련의 과정으로 자락관법료만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동일 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산정방법

○ 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

동일부위에 자락술과 자락관법을 동시 시술한 경우 자락술은 자락관법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락관법료만 산정함.

참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고시 제2022-252호(2022.11.1. 시행)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 매일

나.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 주 4회

다.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 주 2회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법인대표자의 개인 개설 가능 여부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Q
uestion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가요?

A
nswer

법인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간주, 여러 기관의 법인 대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개설자로 적용 되므로 복수의료기관(이중 등록 불가) 진료가 불가합니다.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6호(2010.1.28. 시행)

의사의 중복근무 가능 여부

Q
uestion

타 기관(A)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우리 기관(B)에 매주 3일 20시간 동안 근무하는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swer

2010년 1월 5일부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의료자원과-90호, 2010.01.05.) 의사가 양쪽 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 입사 기관에만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등록할 수 있고, 후 입사 기관에는 “기타” 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의원에서 먼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사를 B의원에서 봉직의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B의원에서의 근무 시간이 ‘비상근’ 요건을 충족하여도 ‘비상근’이 아닌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의료인력에 따른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수가 등)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선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차등수가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선입사기관: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 및 행위별수가 적용
- * 후입사기관: 행위별수가는 적용(상근적용 수가제외) 가능, 수가차등제 적용 불가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6호(2010.1.8. 시행)

[참고]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건보법상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기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		
구분	근무조건	수가산정기준	구분	근무조건	정원
상근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1인 산정	전속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	의료인 정원 1인
비상근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0.5인 산정			
기타	주 3일, 20시간 미만(상근, 비상근 근무조건 미충족 인력) or 후입사	0인 산정	비전속	주4일 32시간 미만 근무	의료인 정원 0인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 가능 여부

Q
uestion

타 기관(A)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우리 기관(B)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nswer

수련중인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수련병원(母병원)의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 근무시 인력신고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하면 됩니다.

○ 행정해석, 급여65720-559호(2003.5.13. 시행), 자원65520-1719(2003.5.13. 시행)

※ 참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정보마당> 의료자원 급여기준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물리치료사의 차등수가 인정 가능 여부

Q
uestion

물리치료사가 1인 상근, 1인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휴가일 경우 비상근 물리치료사로도 차등수가 인정이 가능할까요?

A
nswer

물리치료사 차등수가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산정가능하며,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30명 까지 인정하며, 상근근무 전제 하에 비상근 0.5인 15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 질향상 및 적정진료가 담보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만약 상근 물리치료사 휴가 시 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 인력을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0호(2008.4.22. 시행)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 신고방법

Q
uestion

검체검사 질 가산 진단검사분야 산정을 위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심평원에도 교육이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A
nswer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이수일로부터 1년간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항목을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 교육이수의사 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 → 임시저장 → 이수증 첨부 후 최종제출

※ 고시 제2017-111호(2017.7.1. 적용) 2017년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Q&A 참고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상급병실료 일반병상 확보 기준

Q
uestion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비급여)를 받기 위하여 일반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nswer

2020년 1월 1일부로 변경 적용되고 있는 환자로부터 상급병실료 비용 징수가 가능한 의료기관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의료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 및 아동·분만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할 것
- 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 제외):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60% 이상 확보할 것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의원급은 확보비율 기준 미적용

※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요양기관 시설 등 공동이용 가능 여부

Q
uestion

요양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14

요양기관
현황관리

A
nswer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관련[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1. 라. 항은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공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해당 진료항목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신고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신고 → 시설 or 장비 공동이용 기관신고

Q
uestion

의료장비 공동이용 계약서를 체결하면 임대 요양기관의 모든 장비를 공동이용 할 수 있나요?

A
nswer

보건복지부 고시 2008-5호(2008.2.1.)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물리치료료 및 full PACS 산정지침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공동이용 불가 장비

대분류 명칭	대분류 목적 명칭	장비품목 대분류 명칭	장비번호(6자리)
검사행위 관련장비	검체검사장비	요화학검사기 등	A1****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기타 영상진단 등 장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B30300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본 물리치료장비	적외선조사기 등	C1****
	단순 재활치료장비	의료용조합자극기 등	C2****
	전문 재활치료장비	기능적전기자극기 등	C3****

※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및 산정지침(보건복지부 고시)」상 별도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이 없는 기타 이학요법장비(장비번호 C4****)는 공동이용 가능

15 인력 등급 및 차등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Q
uestion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간호사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nswer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에 서명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

15

인력등급
및
차등제

(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내용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고시 제2021-319호(2022.1.1. 시행)로 조회 가능함(고시 및 행정해석 전문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심사기준)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Q
uestion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양사 가산과 관련하여 영양사 A인력은 9시 부터~15시 까지 근무, B인력은 15시부터~18시까지 근무를 해도 영양사 가산 적용가능한가요?

A
nswe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2.7.1.시행) 및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I. 행위 제17장 입원환자식대에 따라서, 영양사 산정기준 (1) 전일제 영양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며, (2) 단기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고,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시 및 행정해석 전문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 서비스 > 심사기준)

15

인력등급
및
차등제

Q
uestion

영양사가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식사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되나요?

A
nswer

당해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인력 산정기준

○ 고시 제2021-184호(2022.7.1. 시행)

1. 일반원칙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 산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산정기준

- (1)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 (2)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나. 산정방법

- (1) 기본식사(분유, 경관영양유동식 제외), 일반식 가산
 - (가)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 (나)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 (2) 치료식 영양관리료
 - (가)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 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 (나)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치료식(별균식 포함)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 (다)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별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다. 현황신고

-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의2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관련
근거

위탁업체의 조리사로 조리사 가산이 가능한지?

○ 고시 제2021-184호(2022.7.1. 시행)

- 위탁업체 조리사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아니므로 조리사 가산이 불가함.

15

인력등급
및
차등제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II

요양기관 업무포털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요양기관 업무포털

요양기관 대상으로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영상자료제출 업무 등 정보제공

○ 접속경로: <https://biz.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털 메인화면

◇ 마이메뉴서비스

○ 원하는 화면을 골라 메뉴 생성 및 원클릭으로 업무 화면을 열 수 있는 서비스

○ 심사기준, 고시, 수가, 약가 등 관련정보 조회

업무안내

의료기관관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자보함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공통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센터

패임가관 로그인

심사기관 종합서비스

심사기관 자료 제출 시스템

청구영입 참여기준

의료기관 급여기준

보건의료기관 동원신고포털

심사평가정보 공개시스템

심사평가정보 건의관리회

심사평가정보 공개지

보건의료를 가치있게, 온 국민을 건강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보알림방

마케팅 메뉴

「치료재료」 고시 제2022-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22-03-03)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화면 출력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 기준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
심사지침 전문

최신 8도년도
심사기준 조회

☒ 주제어
 ☐ 제목
 ☐ 관련근거
 ☒ 전체
 ☐ 고시
 ☐ 행정해석
 ☐ 심사지침

☐ 색인분류
 ☐ 치료재료코드
 ☐ 공개심의사례
 ☐ 전산심사사례

> 검색내용 [초음파]
 색인분류검색

> 개최일자/시행일자
 2004-02-05 ~ 2022-03-07

🔍 조회

> 검색내역검색 🔍 조회
 ※심의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사례이므로, 타 사례와 심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기준**
✓ 개최일자/시행일자를 수정하시면 2004년 2월 5일 이전의 심사기준도 조회 가능 합니다.
급여기준 이력조회
역설자료장
총 : 63건

개치시행일자	번호	구분	관련근거	제목	첨부	조회수
2022-03-01	06-01	고시	고시 제 2022-55호(약제)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종명: 듀오다트복합)	📎	55
2022-02-03	02-01	고시	고시 제 2022-32호(행위)	갑상선 부갑상선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4705
2022-02-03	02-02	고시	고시 제 2022-32호(행위)	갑상선 부갑상선재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2363
2021-10-01	05-02	고시	고시 제 2021-245호(약제)	Migalastat 경구제(종명: 갈라스트드복합)	📎	447
2021-08-31	01-01	고시	고시 제 2021-231호(행위)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14465
2021-07-01	06-12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28957
2021-07-01	06-13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안(안구 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1789
2021-07-01	06-14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유방 역외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8460
2021-07-01	06-15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후방(동맥, 종막, 뇌줄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5088
2021-07-01	06-16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상복부(타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7867
2021-07-01	06-17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하복부(췌수 소장 대장 세하부 직장 항문), 비뇨기(신장 방광 방정)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5567
2021-07-01	06-18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2764
2021-07-01	06-19	고시	고시 제 2021-183호(행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5966
2021-03-30	05-01	고시	고시 제 2021-104호(기결정)	자궁양궁초음파	📎	2552

<< < | 1 / 4 | > >>
 이동
 20개씩 보기 ▼
 > >>

◇ 전산심사정보

○ 관련근거, 점검내역(인정상병, 인정횟수 등), 적용일, 점검예시 등 안내

삼사기준 종합서비스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심사지점 전문

최신&다빈도
심사기준 조회

행위

수거정보

행위정의

의약품

약가정보

입찰환사용약제
(항암요법 등)

의약품의약품정보

치료재료

치료재료대정보

급여비급여목록정보

치료재료목록파일

기타

공지사항

청구관련기준
(마스터파일)

요양기관현장조사

전산심사정보

조회조건 전체

조회

총: 95건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최종수정일	조회	첨부
95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0.3밀리그램 등) 점검	전산심사부	2023-05-10	2023-05-10	44	
94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점검	전산심사부	2023-05-10	2023-05-10	27	
93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점검	전산심사부	2023-05-10	2023-05-10	38	
92	다주파수 바이오파인션스분쇄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점검	전산심사부	2023-04-27	2023-04-27	53	
9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점검	전산심사부	2023-04-26	2023-04-26	51	
90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점검	전산심사부	2023-04-12	2023-04-12	109	
89	Zaleplon 경구제(품명: 잘레플론5밀리그램 등) 점검	전산심사부	2023-04-12	2023-04-12	65	
88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점검	전산심사부	2023-03-22	2023-03-22	138	
87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점검	전산심사부	2023-03-08	2023-03-08	80	
86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마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점검	전산심사부	2023-03-08	2023-03-08	93	
85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	전산심사부	2023-02-22	2023-02-22	141	
84	BEGRAFT PERIPHERAL PLUS 점검	전산심사부	2023-02-22	2023-02-22	45	
83	Azelinidipine 경구제(품명: 아젤넬락정 등) 점검	전산심사부	2023-02-08	2023-02-08	107	
8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 점검	전산심사부	2023-02-08	2023-02-08	114	
8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관련 치료재료 점검	전산심사부	2023-02-08	2023-02-20	57	

« < 1 / 5 이동 20개씩 보기 > »

※ 사전안내 항목은 '사전안내 게재일' 기준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며, 고시 및 행정해석 등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영상자료제출

- 요양기관에서 전송프로그램(uploader)통해 의료영상자료 전송
 - 의료영상자료가 저장관리되어 1차심사 및 이의신청 시 이용 가능
- 접속경로 : 업무안내 > 안내 > 영상자료제출 업무안내 > 심사자료 업로더 설치파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여 설치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① 안내 · 요양기관업무포털 이용안내 · 심사제도안내 · 개설 및 폐업안내 · 평가안내 ·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안내 · 진료의뢰/회송 안내 · 영상자료제출 업무안내 · 심사참고자료 제출시스템 안내	① 자료방 · FAQ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질병군별포괄수가(DRG) · 신포괄수가	① 정보방 · 청구관련코드조회 · 공개심의사례 · 상대가치점수	① 주제별 분석심사 · 주제별 분석심사 안내 · 지침 등 자료실 · 의학적 근거자료 조회 · 분석심사사례 · 분석지표 · 전문가심사위원회 회의				

업무안내
Guide of Business

영상자료제출 업무안내 x

홈 > 업무안내 > 안내 > 영상자료제출 업무안내

영상자료제출시스템 이전 안내

※ 개요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편(CO)등 심사참고자료 제출 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절차

→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설치파일 다운로드

→ **호스트파일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위 설치파일과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진행 하신 후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FAQ는 업무안내 > 자료방 > FAQ의 영상자료제출 업무유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심 · 이의신청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①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안내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 재심사조달청구/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 · 보완자료제출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정산심사통보사조회(서면통보기관용)	② 심판청구 · 안내 · 심판청구 · 심판청구 진행과정확인	③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 · 안내 · 청구	④ 전료배액면요청 · 전료배액면요청 ·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1) 재심 및 이의신청서 서식

○ 접속경로: 업무안내 > 자료방 > 서식자료실

업무안내 의료기관권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중재보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업무안내
Guide of Business

서식자료실 x

홈 > 업무안내 > 자료방 > 서식자료실
검색

> 조항고지 견해

Q 조회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최종수정일	조회	첨부
2	의약실태서식	의약실태팀	2013-05-03	2013-05-03	23,708	
1	의약실태서	경영정보부	2003-05-01	2011-05-22	26,558	

2) web 접수

○ 접속경로: 정산관리 >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정산관리 > 이의신청/환수/정산

○ 조회방법: 01~05 중 선택 > 이의신청 할 명일련 더블클릭 /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체크 / 신청내역 체크 후 하단에 사유와 첨부 파일 입력 / 최종제출

[illegible]

3) 진행과정 조회

○ 접속경로: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4) 정산 결과

○ 접속경로: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조회조건: [작업구분: 정산심사내역서], [정산구분: 정산], [정산차수: 91~94], [정산년월: 입력하기] 후 조회

4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1)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란?

청구명세서 청구(접수)과정에서 확인되는 기재착오 등 청구오류 건을 심사에 들어가기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접수 후 2일 이내 수정·보완)

※ 본 서비스를 통하여 요양기관에서 직접 심사 전에 오류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재사조청구 및 이의신청 업무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 다발생 청구오류 내용

▶ 금액산정 착오(A코드) / 코드 또는 코드구분착오(K코드)

- 조치방법으로 원무시스템 메뉴 중 기초자료관리(수가, 약가, 치료재료대 등 관리하는 화면)에서 오류 발생된 **청구코드에 대한 단가 및 청구코드 또는 코드구분을 변경해야 함**
- ※ 원무시스템 마다 수가, 약가, 치료재료대 등 관리하는 화면 명칭이 다를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F코드)

- 구입 시 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청구명세서 청구(접수)전에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 신고방법 및 제출방법
 - ①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②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후 확인 ⇨ 접수하기

▶ 수탁기관기호착오(L코드)

- 원내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외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해당기관의 기호가 정확히 들어와야 하나 잘못된 경우로서 검사 보내는 수탁기관에 연락하여 **수탁기관기호 확인해야 함**

▶ 수진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10코드) /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91코드)

- 오류 발생된 수진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 해당 환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함

○ 청구오류 수정·보완 요령

- 문자서비스(SMS), 웹메일, 진료비청구포털 통보서 등 수신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수정보완에서 수정 및 전송
 - 수정(통보)대상 자세한 조치방법은 아래화면 **청구오류 수정보완요령** 을 참고

1. HIRA 요양기관업무포털

2. '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수정보완'으로 이동

청구오류 수정보완

입수일자: 2017-01-02 ~ 2018-03-09

단순가제책요

접수일자	접수번호	보험자	진료형태	진료분류	발생/수정	발생금액	조정 및 수정	발생/수정	발생금액	조정 및 수정	발생/수정	조정 및 수정	통보일자	수정 가능기간	전송	반송
2017-08-25	4068498	공단	외래	치과분과	1/0		조회/수정						2017-08-25	28	이전	반송
2017-08-25	4068499	공단	외래	산/소아과분	7/0								2017-08-25		이전	
2017-08-25	4069592	공단	외래	내과분과	9/0								2017-08-25	2017-08	이전	
2017-08-25	4069791	공단	외래	외과분과	8/0	1,036,560	조회						2017-08-25	2017-08	이전	
2017-08-25	4069823	공단	외래	외과분과	4/0	171,980	조회						2017-08-25	2017-08-28	이전	
2017-08-25	4069956	공단	외래	안/이비인후	1/0	48,310	조회						2017-08-25	2017-08-28	이전	
2017-08-25	4069810	보호	외래	외과분과	1/0	94,620	조회						2017-08-25	2017-08-28	이전	
2017-01-02	4000289	공단	외래	외과분과	1/0	36,220	조회						2018-01-30	2018-02-02	이전	

필요시 반송가능

2) 청구오류 사전점검

‘청구오류 사전점검’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접수)전에 수시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점검시스템을 통해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실제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조정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료비 지급 및 행정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서비스

★유의사항: 청구오류 사전점검은 진료비 지급과 무관하므로 오류 점검 후 수정하시어 꼭 실청구를 해야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 청구명세서 접수과정에서 청구오류건을 감소시키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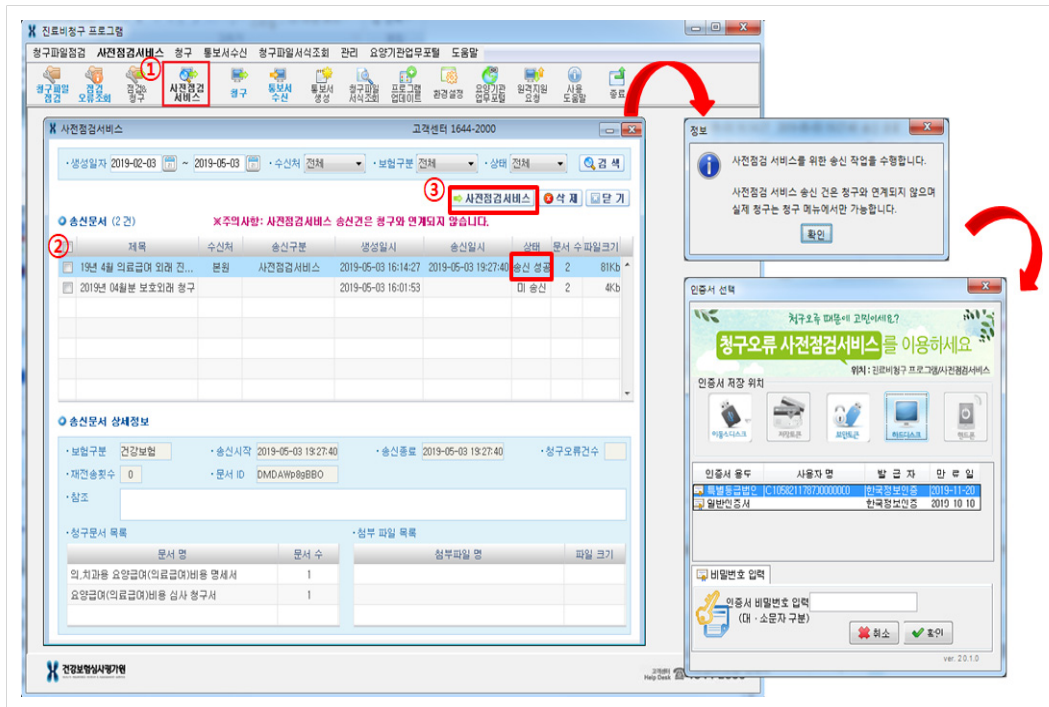
- 진료비 청구(접수)전에 진료비청구포털프로그램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이용

○ 청구오류 사전점검의 좋은 점은?

- 반송, 심사불능, 심사조정, 인력·장비·시설 등 1,387항목* 점검 서비스 제공
*2023년 3월 기준
-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이용가능

○ 청구오류 사전점검 요령

- ① 상단의 메뉴에서 사전점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② 사전점검 서비스로 점검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체크 박스)
- ③ 사전점검서비스 버튼을 눌러서 심사평가원에 청구파일을 송신합니다.



④ 점검결과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의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사전점검' 확인

5 휴대전화문자(SMS) 서비스

‘휴대전화문자(SMS) 서비스’란?

- ☞ 진료비청구 접수(반송)현황, 심사진행과정 등을 문자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 문자서비스(SMS) 제공 정보

- ① 진료비청구 후 접수(반송) 결과 및 청구오류 점검결과 안내
- ② 심사완료 후 심사결과통보서 등 발송 안내
- ③ 심사보완자료 요청 관련 안내
- ④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고시 안내 등

○ 신청하기

 ①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진료비청구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청구 진행과정 -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 전자청구문서조회 - 영세서불능신청및내역조회 - 가진급내역 - 미청구자료조회 -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조회 - 가정간호기분방문료 청구횟수조회 - 신청 제출 진행과정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전자청구 신청 SMS신청 - 통보서메일신청 - 대행청구기관 통보	① 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 관련 신청 ⇄ SMS신청 클릭
SMS신청 x 홈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문자서비스(SMS) 신청 및 변경 < 요양기관 통보서비스인 SMS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우리들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직위,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용자 등록시부터 삭제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결과 통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사용자 등록 사용자 삭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함’ 체크 후 사용자 등록 클릭

④ 담당자 정보(이름/직위)입력 후 휴대전화번호 클릭

⑤ 휴대전화 인증 실시

⑥ 원하는 서비스의 체크박스에 체크
 - 그룹단위 서비스 선택 가능
 - 항목단위 서비스 선택 가능
 - 전체선택 가능

⑦ 등록 클릭

문의 : 행복의 전화 1644-2000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별침

부서별 전화번호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Seoul Branch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부서별 전화번호

민원사안	세부민원사항	담당 부서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2, 9, 13, 14층		
명세서 접수	서면(디스켓)접수	고객 지원부	3772-8844
접수	EDI 접수, 반송		3772-8838
S/W업무	청구 프로그램 (S/W 검사 및 인증)		3772-8848
치료재료 (의약품)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관리 구입약가 확인		(국번없이) 1644-2000
요양기관 현황관리	요양기관 기호부여 (지정, 폐업)		
	요양기관 변경 (인력, 시설, 장비)		
	요양기관 계좌 변경		
	간호등급, 입원환자식, 중환자실 등급		
	종합민원		(국번없이) 1644-2000
요양기관 심사 및 평가	병·의원 약국 요양병원 보건기관	○ 1차 심사, 재심·이의신청 강남구(요양기호 끝자리 짝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요양기호 끝자리 짝수),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심사평가 1부 ▷ 1차심사 3772-8871~6 3772-8881~6 ▷ 재심, 이의신청 3772-8900~1
		○ 1차 심사, 재심·이의신청 강남구(요양기호 끝자리 홀수),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요양기호 끝자리 홀수),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심사평가 2부 ▷ 1차심사 3772-8921~7 3772-8931~6 ▷ 재심, 이의신청 3772-8905, 8906, 8909
	종합병원	○ 1차 심사: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서울 전 지역	심사평가 3부 3772-8976~9 3772-8980~3
		○ 1차 심사: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서울 전 지역	3772-8971~5
		○ 재심·이의신청	3772-8985~7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요양병원 보건기관	○ 심판청구	심사평가 3부 3772-8991~3
	한방병원 한의원	○ 1차 심사, 재심·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평가 1부 3772-8891~5
	치과병원 치과의원	○ 1차 심사, 재심·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평가 2부 3772-8941~2 3772-8944~6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2023년 5월 인쇄

2023년 5월 발행

발행인 : 강 중 구

편집인 : 지 점 분

발행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TEL : 02-1644-2000

URL : <http://www.hira.or.kr>

인 쇄 : 공감(서울디자인센터) 02-6951-0068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